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9
----------	-----

제출년월일 : 2024. 8.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상 조문과 부합되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 및 자구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규정상 필수 심의대상을 조례에 명시하여 원활한 운영 도모
- 나.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본원칙에 맞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여 법규 상호간 체계 확립
- 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기간 : 2024. 7. 4. ~ 2024. 7. 24. (20일간)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 첨부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6)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7)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사항 미반영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개선안
성별 영향 평가	제3조(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u>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u> 1. 당연직: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전생활국장, 행정문화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정·행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미반영	[미반영 사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상위법상 규정을 불필요하게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 준수)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 중 위촉위원”을 “위
촉위원”으로, “하되,”를 “하며, 두 차례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전생활국장, 행정
문화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정·행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심의록)”을 “(회의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록”을 “회의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회의개회”를 “회의개최”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② (생략)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행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복지교육국장, 도시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③ (생략)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

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전생활국장, 행정문화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정·행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④ 위촉위원-----
----- 하며, 두 차례만 ---.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회의록) -----

----- 회의록-----

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
2. ~ 5. (생략)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_____.

1. 회의개최 -----
2.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정 창 섭